

## 미래에셋평생소득TIF혼합자산자투자신탁(BM781)

투자위험등급 4등급[보통 위험]						미래에셋자산운용(※)는 이 투자신탁의 <u>실제 수익률 변동성</u> 을 감안하여 <b>4등급</b> 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b>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b> 이며, 집합투자기구 재산을 주로 <b>국내외</b> 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함으로, <b>국가위험, 환율 변동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b> 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미래에셋평생소득TIF혼합자산자투자신탁'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한 요약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전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b>1. 투자목적</b> 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b>2. 투자전략</b> 투자대상 모투자신탁을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등에 따라 기본수익전략, 시장중립전략, 멀티인컴전략, 자본수익전략 등 4개의 전략으로 구분하여 투자합니다.									
분류	투자신탁, 혼합자산,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추가납입가능), 모자형, 종류형									
투자비용	클래스 종류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총보수 (단위: %)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 (단위:천원)			
		판매 수수료	총보수	판매보수	동종유형 총보수	총 보수 · 비용	1년	2년	3년	5년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	0.82	0.48	-	1.04	106	218	335	584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	-	0.58	0.24	-	0.8	81	167	257	449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2)	-	0.74	0.4	-	0.96	98	201	309	539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2e)	-	0.54	0.2	-	0.76	77	159	245	427
(주1)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는 투자자가 <b>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비용(판매수수료 + 총보수비용(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을 의미</b> 합니다. 선취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은 일정하고,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하였습니다.										
(주2) <b>이 투자신탁은 종류 A형 및 C형 클래스를 동시에 보유하지 않아 클래스 간 판매수수료 차이 및 보유기간에 따른 비용역전현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b>										
(주3)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체적인 투자비용은 투자설명서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56페이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 <b>"동종유형 총보수"</b> 는 <b>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b>										
* 합성 총보수·비용은 이 집합투자기구에서 지출된 보수와 기타비용에 투자비율에 따른 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전)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 추정치(기타비용 제외)는 약 0.20%로 추정됩니다.										

투자실적 추이 (연평균 수익률, 단위: %)	클래스 종류	최초 설정일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21.03.01~ 22.02.28	20.03.01~ 22.02.28	19.03.01~ 22.02.28	17.03.13~ 22.02.28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 금(C-Pe)	2017.06.23	3.22	5.77	6.56	4.65	4.65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 금(C-P2e)	2017.09.29	3.26	5.81	6.60	4.71	4.7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 연금(C-P)	2017.06.23	2.98	5.52	6.31	4.42	4.4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 연금(C-P2)	2017.03.31	3.06	5.60	6.39	4.85	4.85	
투자신탁		3.81	6.37	7.17	5.69	5.69	
비교지수	2017.03.13	-	-	-	-	-	
수익률 변동성		4.00	4.62	6.35	5.31	5.29	

(주1) 비교지수 : 없음

※이 투자신탁은 다양한 국가 및 자산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분산투자되며 투자목적 달성을 위해 모투자신탁의 투자비중이 유연하게 조절될 수 있어 비교지수를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주2)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집합투자기구 총비용 지급후 해당 기간동안의 세전 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3)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은 해당기간 펀드의 연환산 주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등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써,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펀드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운용전문 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22.03.31기준)	동종집합투자기구				운용 경력년수	
					연평균 수익률(국내외혼합혼합자산)(단위: %)		운용역	운용사		
				집합투자 기구 수	운용규모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김정욱	1980	팀장	9개	38,675억원	2.37	9.88	3.13	8.71	6년10개월

(주1)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을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http://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2)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모자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운용현황과 수익률은 모펀드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주3)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1.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이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투자 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5.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6.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간이투자설명서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어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시면 귀하의 집합투자증권 매입 이전까지 교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투자자 유의사항은 투자설명서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원본손실위험	<p>이 집합투자기구는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매입한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 보호를 하지 않습니다.</p> <p>이 집합투자기구는 해외 자산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원화(KRW)와 투자대상국 통화간의 환율변동에 따라 투자자산의 가치가 변하는 위험을 지게 됩니다. 환위험 노출과 관련하여서는 당투자신탁 위험관리의 환위험 관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p> <p><b>(1) 환헤지 여부</b> <b>미래에셋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채권)</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 투자신탁은 환헤지가 가능한 외화자산에 대하여 환헤지를 실시합니다.</li> </ul> <p><b>미래에셋스마트알파플러스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 투자신탁은 효과적으로 환헤지가 가능한 외화자산에 대하여 환헤지를 실시합니다.</li> </ul> <p><b>미래에셋글로벌알파솔루션증권모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 투자신탁은 효과적으로 환헤지가 가능한 외화자산에 대하여 환헤지를 실시합니다.</li> </ul> <p><b>미래에셋글로벌인컴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 투자신탁은 환헤지가 가능한 외화자산에 대하여 환헤지를 실행할 계획입니다</li> </ul> <p><b>미래에셋글로벌배당프리미엄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 투자신탁은 환헤지가 가능한 외화자산에 대하여 환헤지를 실행할 계획입니다.</li> </ul> <p><b>미래에셋부동산인프라혼합자산모투자신탁(재간접형)</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 투자신탁은 효과적으로 환헤지가 가능한 외화자산(미국달러(USD), 유로(EURO), 일본엔(JPY))에 대하여 환헤지를 실시합니다.</li> </ul> <p><b>미래에셋글로벌EMP인컴배분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 투자신탁은 기본적으로 환헤지를 실시하지 아니합니다.</li> </ul> <p><b>미래에셋글로벌솔루션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 투자신탁은 기본적으로 환헤지를 실시하지 아니합니다.</li> </ul> <p><b>미래에셋인사이트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b></p>
주요투자 위험	<p><b>환율변동위험</b></p>

-이 투자신탁은 투자 자산이 특정 통화에 집중되어 투자될 경우 환헤지가 가능한 외화자산에 대하여 환헤지를 실행할 예정입니다.

#### **미래에셋MSCIACWORLD인덱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환헤지를 실행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 **미래에셋이머징달러회사채증권모투자신탁(채권)**

-이 투자신탁은 환헤지를 실행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 **※참고(자투자신탁의 환헤지 여부)**

- 미래에셋이머징달러회사채증권자투자신탁1호(H)(채권): 이 투자신탁은 효과적으로 환헤지가 가능한 외화자산(미국달러(USD))에 대하여 환헤지를 실시합니다.

- 미래에셋이머징달러회사채증권자투자신탁1호(UH)(채권): 이 투자신탁은 환헤지를 실행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 **미래에셋글로벌ESG사회책임투자인덱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환헤지를 실행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 **(2) 환헤지 방법**

환헤지 전략 실행 시 장외파생상품인 선물환 거래 또는 장내파생상품인 통화선물 등의 방법을 활용 할 수 있습니다.

#### **(3) 목표 헤지비율**

#### **미래에셋MSCIACWORLD인덱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이 투자신탁은 환헤지를 실행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다만, 해당 통화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하여 환헤지를 통한 위험 축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 운용역은 환헤지 전략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 **미래에셋글로벌EMP인컴배분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이 투자신탁은 기본적으로 환헤지를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해당 통화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하여 환헤지를 통한 위험 축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해당 통화에 대한 외환거래의 유동성이 증가 또는 거래 비용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거래 위험이 축소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담당 운용역은 일부 혹은 전부에 대해 환헤지 전략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 **미래에셋글로벌ESG사회책임투자인덱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이 투자신탁은 환헤지를 실행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다만, 해당 통화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하여 환헤지를 통한 위험 축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 운용역은 환헤지 전략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 **미래에셋글로벌배당프리미엄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

-이 투자신탁은 헤지 비용 등을 감안하여 효과적으로 환헤지 실행이 가능한 외화자산에 대하여 80% 수준의 환헤지를 목표로 합니다.

다만, 보유 자산의 가치 변동으로 인해 헤지비율이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순자산가치의 규모, 유동성 비율 및 헤지 비용 등 투자신탁의 운용현황을 고려하여 환헤지 전략의 효과적인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러한 상황이 해소될 때까지 환헤지를 수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미래에셋글로벌솔루션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이 투자신탁은 기본적으로 환헤지를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해당 통화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하여 환헤지를 통한 위험 축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해당 통화에 대한 외환거래의 유동성이 증가 또는 거래 비용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거래 위험이 축소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담당 운용역은 일부 혹은 전부에 대해 환헤지 전략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 미래에셋글로벌알파솔루션증권모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이 투자신탁은 해지 비용 등을 감안하여 효과적으로 환헤지가 가능한 외화자산(USD 등)에 대해서 80% 이상 수준으로 환헤지를 추구할 예정입니다. 다만, 투자대상 집합투자증권이 보유하고 있는 이종 통화 자산에 대해서는 별도의 환헤지를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환율변동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보유자산의 가치 변동으로 인해 해지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는 순자산가치의 규모, 유동성 비율, 해지 비용 및 통화 별 비중 등 투자신탁의 운용현황을 고려하여 환헤지 전략의 효과적인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환헤지를 수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미래에셋글로벌인컴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

-이 투자신탁은 외환시장상황 변경 및 운용역의 투자전략 상 투자신탁의 위험축소를 목적으로 환헤지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설정·해지 또는 투자증권의 매매로 인하여 헛지대상 기초자산의 규모가 급변하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초과 해지포지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미래에셋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채권)

-이 투자신탁은 외환시장상황 변경 및 매니저의 투자전략상 투자신탁의 위험축소를 목적으로 환헤지를 합니다. 다만, 설정/해지 또는 투자증권의 매매로 인하여 헛지대상 기초자산의 규모가 급변하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초과해지포지션의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미래에셋부동산인프라혼합자산모투자신탁(재간접형)

-이 투자신탁은 효과적으로 환헤지가 가능한 통화(미국달러(USD), 유로(EURO), 일본엔(JPY))에 대해서 80% 이상 수준에서 환헤지를 추구할 예정입니다. 다만, 보유자산의 가치 변동으로 인해 해지비율은 달라질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는 순자산가치의 규모, 유동성 비율, 해지 비용 및 통화 별 비중 등 투자신탁의 운용현황을 고려하여 환헤지 전략의 효과적인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 될 경우 환헤지를 수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미래에셋스마트알파플러스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

-이 투자신탁은 주로 원화표시 자산에 투자하지만 투자전략 상 외화표시 자산에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외화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효과적으로 환헤지가 가능한 외화자산(미국달러(USD) 등)에 대하여 80% 이상으로 환헤지를 추구할 예정입니다. 다만, 보유자산의 가치 변동으로 인해 해지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는 순자산가치의 규모, 유동성 비율 및 해지 비용 등 투자신탁의 운용현황을 고려하여 환헤지 전략의 효과적인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환헤지를 수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미래에셋이머징달러회사채증권모투자신탁(채권)

-이 투자신탁은 환헤지를 실행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다만, 해당 통화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하여 환헤지를 통한 위험 축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해당 통화에 대한 외환 거래의 유동성이 증가 또는 거래 비용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거래 위험이 축소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담당 운용역은 환헤지 전략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p>※참고(자투자신탁의 목표 해지비율)</p> <p>- 미래에셋이머징달러회사채증권자투자신탁1호(H)(채권): 이 투자신탁은 효과적으로 환헤지가 가능한 모투자신탁의 외화자산(미국달러(USD))에 대하여 90%±10% 수준에서 환헤지를 추구할 예정이지만, 보유자산의 가치 변동으로 인해 해지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집합투자업자는 순자산가치의 규모, 유동성 비율 및 해지 비용 등 투자신탁의 운용현황을 고려하여 환헤지 전략의 효과적인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환헤지를 수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p> <p>- 미래에셋이머징달러회사채증권자투자신탁1호(UH)(채권): 이 투자신탁은 환헤지를 실행하지 않을 계획입니다.</p> <p>다만, 해당 통화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하여 환헤지를 통한 위험 축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해당 통화에 대한 외환 거래의 유동성이 증가 또는 거래 비용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거래 위험이 축소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운용역은 환헤지 전략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p> <p><b>미래에셋인사이트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b></p> <p>-이 투자신탁은 투자 자산이 특정 통화에 집중되어 투자될 경우 환헤지가 가능한 외화자산에 대하여 100% 수준으로 환헤지를 추구할 예정이지만 보유 자산의 가치 변동으로 인해 해지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집합투자업자는 순자산가치의 규모, 유동성 비율 및 해지 비용 등 투자신탁의 운용현황을 고려하여 환헤지 전략의 효과적인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환헤지를 수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p>
	<p><b>(4) 환헤지의 비용 및 투자신탁 수익률에 미치는 효과</b></p> <p>국가간 금리차이로 인한 손익을 제외하고도, 환헤지를 위해 중개인과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수수료 등 비용이 발생하며, 이는 투자신탁 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p> <p>다만, 이 투자신탁은 주된 환헤지 방법으로 장외파생상품인 선물환 거래를 수행할 수 있는데, 선물환 거래는 중개인에게 별도의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상대방과의 손익교환방법에 따라 총 손익을 정산하게 되므로, 환헤지에 따른 별도의 비용산출을 추정하기는 곤란하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p>
종목위험	이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투자대상종목의 가치는 해당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 등 비교적 안전자산이라 할지라도 해당 종목의 가격변동에 의해 원금손실을 입게 될 수도 있습니다.
주식가격 변동위험	주식의 가치는 일반적으로 발행회사 고유의 위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라서도 급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식은 다른 여타의 자산보다 그 변동성이 큰 특징이 있으며, 이로 인해 주식투자 시에는 투자원금의 손실 가능성이 매우 큰 위험이 있습니다.
부동산 및 인프라 자산 투자위험	부동산, 인프라 관련 자산의 가치는 해당지역의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이자율 등 여러 거시경제지표의 변화 및 기타 가격변동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부동산, 인프라 관련 집합투자기구 등 간접적인 방법으로 부동산, 인프라 관련 자산에 투자하게 되는 경우라도 부동산, 인프라 관련 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것과 동일한 위험수준에 노출됩니다.
국가위험	이 집합투자기구는 해외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에 매우 많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일부 국가의 경우 외국인 투자 한도, 넓은 매매호가 차이, 거래소의 제한된 개장시간과 거래량 부족 등으로 인해 유동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해당국가 정부정책 및 제도의 변화로 인해 예상치 못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조세제도 변화 등의 정책적 변화 및 사회전반적인 투명성 부족으로 인한 공시자료의 신뢰성 등의 위험도 있습니다.

## 미래에셋평생소득TIF혼합자산자투자신탁

매입방법	1. 17시 이전 : 자금을 납입하는 영업일(D)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2. 17시 경과후 : 자금을 납입하는 영업일(D)로부터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환매방법	1. 17시 이전 : 환매청구일(D)로부터 제5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9영업일에 환매대금을 지급 2. 17시 경과후 : 환매청구일(D)로부터 제6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10영업일에 환매대금을 지급										
환매수수료	[ C-I, F, C-P, C-Pe, C-P2, C-P2e, C-P2K ] 없음												
기준가	산정방법  공시장소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기준가격은 공고·계시일 전날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순자산총액)을 공고·계시일 전날의 수익증권[당해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000좌 단위로 1원미만 셋째 자리에서 4사5입하여 1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판매회사 영업점,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과세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th>과세의 주요내용</th></tr> </thead> <tbody> <tr> <td>집합투자기구</td><td>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b>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b></td></tr> <tr> <td>수익자</td><td>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td></tr> <tr> <td>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td><td>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연금소득(연금수령시),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연금외수령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 자세한 사항은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td></tr> <tr> <td>퇴직연금계좌 의 세제</td><td>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td></tr> </tbody> </table>			구분	과세의 주요내용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b>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b>	수익자	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연금소득(연금수령시),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연금외수령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 자세한 사항은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계좌 의 세제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과세의 주요내용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b>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b>												
수익자	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연금소득(연금수령시),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연금외수령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 자세한 사항은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계좌 의 세제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환절차 및 방법	해당사항 없음.												
집합투자 업자	<p>미래에셋자산운용(주) (대표번호 : 1577-1640 / 홈페이지 : <a href="http://investments.miraeasset.com">http://investments.miraeasset.com</a>)</p> <p>-미래에셋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채권) 위탁운용사 : 미래에셋자산운용 (홍콩), 위탁업무 : 미시행 -미래에셋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채권) 위탁운용사 : 미래에셋자산운용 (미국), 위탁업무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업무 주1) 및 조사분석업무, 일부 매매업무 -미래에셋인사이트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 위탁운용사 : 미래에셋자산운용 (홍콩), 위탁업무 : 운용 및 운용지시 업무 -미래에셋인사이트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 위탁운용사 : 미래에셋자산운용 (미국), 위탁업무 : 운용 및 운용지시 업무 -미래에셋이머징달러회사채증권모투자신탁(채권) 위탁운용사 : 미래에셋자산운용 (미국), 위탁업무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업무 주1) 및 조사분석업무, 일부 매매업무</p>												
모집기간	모집 개시(2017년 3월 13일)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업일에 한하여 모집, 판매됩니다.	모집·매출 총액	10조좌(단, 모집예정 금액 한도 내에서 존속기간 동안 계속 모집 가능)										
효력발생일	2022년 04월 15일	존속기간	별도로 정해진 신탁계약기간은 없음.										
판매회사	각 판매회사 본·지점(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협회 및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4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183페이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집합투자 기구의 종류	종류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 수수료	수수료 미정구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가 없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판매수수료선택형(A) 및 판매수수료미정구형(C)을 동시에 보유하지 않아 클래스 간 판매수수료 차이 및 보유기간에 따른 비용역전현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판매 경로	온라인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b>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b> 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b>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b>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b>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b> 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b>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b>
	기타	개인연금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금전신탁	법 시행령 제103조에 따른 금전신탁용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기관	기관투자자가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펀드 등	펀드가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랩	Wrap Account(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를 통해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IRP)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 \* 증권신고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 투자설명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kofia.or.kr), 판매회사 홈페이지,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http://investments.miraeasset.com>) 및 QR코드
-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http://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 자산운용보고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http://investments.miraeasset.com> )
- \* 수시공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http://investments.miraeasset.com>)

